산업통상자원부 http://www.motie.go.kr	**보 도 자 료**	보다 나은 정부

2018년 11월 23일(금)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(인터넷. 방송. 통신 배포즉시 보도가능)

배포일시	2018. 11. 22.(목)	담당부서	불공정무역조사과
담당과장	정병락 과장(044-203-5880)	담 당 자	김진석 사무관(044-203-5884) 김애선 주무관(044-203-5887)

무역위원회, 의류 상표권 침해 및 몬카트 완구 저작권 · 상표권 침해 불공정무역행위 판정

- '18. 11. 22. 제383차 무역위원회 개최 -

□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11월 22일(목) 제383차 회의를 개최하여, 의류 상표권 침해 및 몬카트* 완구 저작권·상표권 침해 조사건에 대하여 불공정무역행위 여부를 판정했다.

* '17.8월부터 '18.8월까지 EBS 등 TV 채널에서 방영한 '몬카트' 만화영화(애니메이션)

□ 무역위원회는 의류(티셔츠) 상표권 침해 조사를 완료하고 국내업체 A사에 대해 불공정무역행위가 있다고 판정하여 시정조치 명령 및 과징금 부과 처분을 내렸다.

○ 오른손 브이(V)자 모양의 상표권을 보유한 '보나미텍스 인터네셔널 홀딩 비브이(네덜란드 법인)'는 A사가 왼손 브이(V)자 모양 상표가 부착한 티셔츠*를 미국에서 수입해 국내 판매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무역위원회에 조사를 신청했다.

* 신청인 상표권과 피신청인이 수입한 조사대상물품(티셔츠)은 참고 1 참조

○ 이에 무역위원회는 조사개시결정('18.5.3.) 후 양 당사자 서면조사, 현지조사 등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신청인 상표권에 무효사유가 없고 A사가 티셔츠에 사용한 상표가 신청인 등록상표와 유사하다고 판단하여 A사의 미국산 티셔츠 수입·판매 행위를 불공정무역행위라고 판정했다.

○ 무역위원회는 제재조치로 A사에게 조사대상물품의 수입·판매 행위 중지, 법 위반으로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를 명령하고 과징금을 부과했다.

□ 한편, 무역위원회는 몬카트 완구 저작권·상표권 침해 조사를 완료하고 국내 사업자 B에 대해 불공정무역행위가 있다고 판정하여 시정조치 명령 및 과징금 부과 처분을 내렸다.

○ ㈜삼지애니메이션은 '17년 8월부터 교육방송(EBS)에서 방영된 '몬카트' 제목의 애니메이션을 기획·제작해 해당 애니메이션에 대한 저작권뿐만 아니라 'MONKART' 상표권도 보유하고 있다.

○ 저작권·상표권 침해 조사는 ㈜삼지애니메이션의 신청으로 진행되었고, 무역위원회는 조사개시결정('18.6.7.) 후 양 당사자 의견교환을 통한 서면조사뿐만 아니라 현지조사 등의 조사절차를 수행했다.

○ 무역위원회는 조사결과를 토대로 국내 사업자 B의 중국산 완구 수입 행위가 신청인의 '몬카트' 영상저작물의 저작권 및 'MONKART' 상표권을 침해하는 불공정무역행위라고 판정하고, 제재조치로 해당 물품의 수입 중지 및 폐기처분 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했다.

【붙 임】 1. 의류 상표권 침해 불공정무역행위조사 개요
2. 'MONKART' 완구 저작권·상표권 침해 불공정무역행위조사 개요

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 불공정무역조사과 김진석 사무관(☎ 044-203-5884) 또는 김애선 주무관(☎ 044-203-5887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

참고 1 **의류 상표권 침해 불공정무역행위 조사**

□ **조사 개요**(신청일 '18.4.16.)

○ **(신청인)** 보나미텍스 인터네셔널 홀딩 비브이

○ **(피신청인)** 국내사업자 A사

○ **(조사대상 물품)** 티셔츠(HS코드: 6109.10., 6106.10., 6105.10., 6205.20., 6206.30.)

등록상표 및 조사대상물품의 상표

신청인 등록상표		피신청인 조사대상물품 및 사용상표	
제1022231호  등록상표 1	제1103884호  등록상표 2	  (사용상표 1)	  (사용상표 2)
등록일 : '14.2.12.	등록일 : '15.5.6.		
만료일 : '24.2.12.	만료일 : '25.5.6.		
권리자 : 보나미텍스 인터네셔널 홀딩 비브이			

□ **조사 경과**

○ 조사신청서 접수('18.4.16.), 조사개시결정('18.5.3.)

○ 서면조사('18.5월~10월), 현지조사('18.8.23.)

□ **조사 결과**

○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상표권을 침해한 티셔츠 제품을 미국에서 수입한바, 피신청인의 행위는 불공정무역행위*에 해당하며,

* 「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」 제4조(불공정무역행위의 금지) 규정에 따라 저작권·상표권을 침해하는 물품을 수입하는 행위(제1항 제1호)

- 이는 법 제10조 및 제11조 규정에 따른 제재조치(시정조치 명령, 과징금 부과) 대상임

참고 2 **'MONKART' 완구 저작권·상표권 침해 불공정무역행위 조사**

□ 조사 개요

○ **(신청인)** ㈜삼지애니메이션

○ **(피신청인)** 국내사업자 B(수입업체)

○ **(조사대상물품)** 완구(HS코드: 9503)

신청인 저작권 및 상표권	조사대상물품
저작권 제C-2018-000498호 (몬카트 애니메이션)	
상표 제1190713호 (지정상품: 완구, 장난감 등) 	

□ 조사 경과

○ 조사신청서 접수('18.5.16.), 조사개시결정('18.6.7.)

○ 서면조사('18.7월~10월), 현지조사('18.7.6, '18.9.7.)

□ 조사 결과

○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저작권·상표권을 침해한 완구 제품을 중국에서 수입한바, 피신청인의 행위는 불공정무역행위*에 해당하며,

* 「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」 제4조(불공정무역행위의 금지) 규정에 따라 저작권·상표권을 침해하는 물품을 수입하는 행위(제1항 제1호)

- 이는 법 제10조 및 제11조 규정에 따른 제재조치(시정조치 명령, 과징금 부과) 대상임